

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-18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촉위원 수를 확대함(안 제8조)

1) 위원 수: 15명 이내 ⇒ 20명 이내

2) 위촉위원 중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 대표: 2명 ⇒ 7명

나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을 신설함(안 제9조의2, 제9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2. 2.~2. 21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호선”을 “호선(互選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다.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”를 “한다.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“2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제9조의3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</u>한다.</p> <p>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, 재무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<u>한다</u>.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.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<u>2명</u> 3. 함양·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(3명 이내로 한정한다) 4.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(互選)</u>한다.</p> <p>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, 재무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<u>한다</u>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.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의 대표 <u>7명</u> 3. 함양·합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(3명 이내로 한정한다) 4.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<p>제9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

현 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인이었던 경우</p> <p>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</p> <p><u>제9조의3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